

광영동 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에 관한 사항 게시

광양시 광영동 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제9조(후보자의 자격) ~ 제12조(후보자 사퇴의 신고)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, 기탁금, 후보자 등록, 후보자 사퇴의 신고에 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.

붙 임 체육회장 후보자 자격에 관한 사항 1부. 끝.

2021. 1. 4.

광영동체육회 선거관리위원장



◆ 광영동 체육회장 후보자 자격에 관한 사항

□ 체육회장 후보자 자격

○ 관련규정 : 광영동 체육회장 선거관리 규정 제9조

○ 후보자 자격 :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
- 만 19세 이상의 광영동의 거주자 및 사업체 운영자
- 광영동 체육회 임원 및 대의원을 역임한 자

○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
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-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「형법」 제314조 및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-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 중에 아래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
 -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
 - 승부조작, 편파 판정, 횡령·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
 -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
-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, 지방의회 의원
- 국회의원, 도의원, 시의원

□ 체육회장 후보자 등록 및 기탁금

○ 관련규정 : 광영동 체육회장 선거관리 규정 제9조~제12조

○ 후보자 등록 :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2일간

※ 선거기간 개시일 : 선거인 명부 열람을 시작한 그다음 날

○ 후보자 등록시 제출서류

- 후보자 등록신청서
- 주민등록초본
-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
- 범죄사실 유무 증명서류
-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문서
- 제12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퇴임 증명서는 광영동 체육회 임원이었던 경우에 한함
-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○ 후보자 사퇴의 신고 :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

○ 기탁금 : 4백만원

○ 기탁금 납부

-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후보자 등록 신청자가 본인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